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

구분	세부내용	조문
지정제 실효성 강화	▪ 지자체 장이 지정 시 **신청기관의 급여제공이력, 행정처분내용, 기관 운영 계획** 등 종합적 고려 ▪ 현재 설치 신고만으로 지정이 간주되는 조항을 삭제, **모든 장기요양기관은 절차에 따라 지정**을 받도록 함	안 제31조 안 제32조
지정취소 기준 정비	▪ **1년 이상 급여 미 제공, 사업자등록 말소, 평가거부 기관**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(평가거부에 한함)	안 제37조
서비스 제공원칙 명확화	▪ 서비스 제공 기본원칙으로 **수급자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자립적 일상생활을 지원**하는 것을 규정	안 제3조
부정수급자 재판정	▪ **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**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 경우 **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재판정**할 수 있는 절차 마련	안 제15조
권리구제 절차 정비	▪ **(명칭)** '이의신청(1차)-심사청구(2차)' 명칭을 '**심사청구- 재심사청구**'로 정비 ▪ **(법적성격)** 장기요양 재심사청구(2차)은 **행정심판법의 절차적 규정 준용**	안 제55조 안 제56조 안 제56조의2
유사명칭 사용금지	▪ 민간 보험계약 명칭에 **노인장기요양보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**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	안 제62조의2
민간위원 공무원 의제	▪ 등급판정위원회 등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~제132조 적용 시 공무원으로 봄 *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 개정 후속조치	안 제66조의2

2 질의응답

1. 장기요양기관 퇴출기준 강화 필요성과 주요 내용?

○ 현재는 **평가거부 등 서비스 질적 담보가 어려운 기관**에 대한 **지정취소 근거가 부재**

* '14년 재가 평가결과 : 미실시(1,885개소), E등급(1,971개소, 24.2%)
'15년 시설 평가결과 : 미실시(365개소), E등급(847개소, 23.4%)

- 또 **1년 이상 장기요양급여 미제공, 사업자등록 말소** 등* **사실상 미운영 기관**도 **상당수 존재**하나 지정취소 근거 부재

* 사업자등록 말소 또는 1년 이상 급여 미청구 기관 : 2,851개소(전체의 15.8%)

○ 개정안은 **서비스 질 담보 및 지정제 실효성 강화**를 위해 **평가거부, 사실상 미운영 기관**에 대해 **지정을 취소**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

* (유사입법례) 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, 담배사업법, 공중위생관리법 등

- 기관의 퇴출이력은 **재진입 단계에서도 활용할 계획***

* (현재) 타 지자체에서 진입하는 기관의 행정처분이력 등 확인이 곤란
(개선) 지정 시 공단에 관련자료나 의견을 요청하여 이를 고려

2. 부정 수급자에 대한 재판정 절차 마련 이유?

○ 장기요양보험은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고, **보험자의 직권재조사 권한이 없어** 대상자의 신청이 없으면 **부정한 등급인정이 의심되어도 인정조사 및 등급판정을 재실시 할 수 없음**

○ 인정조사 시점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명백한 경우 **법 제29조**(장기요양급여의 제한)에 따라 **급여제한이 가능**하나,

- 현 시점에서 심신상태의 개선인지 허위진술 등으로 인한 **부정한 등급인정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곤란함**

○ 이에 따라,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**등급판정위원회를 통해 등급을 재판정**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

3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

○ **(대상자) ① 65세 이상 노인** 또는 **②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자** 중, **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**로

- **공단 인정조사과 등급판정위원회 심사**를 거쳐, **요양필요도**에 따라 **5개 등급**으로 구분

(2016.11월말 현재, 단위 : 명, %)

인정자 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
515,378 (100.0)	40,888 (7.9)	74,217 (14.4)	185,040 (35.9)	186,227 (36.2)	29,006 (5.6)

○ **(급여종류) 재가급여와 시설급여**로 구분

(2016.11월말 현재, 단위 : 명)

이용자 계	재가급여							시설급여		
	계	방문요양	방문목욕	방문간호	주야간보호	단기보호	복지용구	계	노인요양시설	공동생활가정
439,167	432,706	248,156	53,246	7,402	51,876	4,915	185,108	154,465	133,924	20,541

* 계는 재가급여, 시설급여, 복지용구 중복 이용을 제외한 수급자 수

○ **(수가) 재가급여는 월 한도액 내**에서 이용, **시설급여는 일 정액제**

- **(본인부담률)** 재가급여 15%, 시설급여 20%

* 기초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자(면제), 그 외 의료급여수급자·차상위(50% 경감)

(2016년도 기준)

구분	수가 수준
재가급여	등급별 월(月) 한도액 * (1등급) 1,252,000원, (2등급) 1,103,400원, (3등급) 1,043,700원, (4등급) 985,200원, (5등급) 843,200원
시설급여	등급별 일(日) 정액 * (1등급) 57,040원, (2등급) 52,930원, (3~5등급) 48,810원

4 장기요양기관 현황

1 장기요양기관 수

(2016.12.31.기준, 단위 개소, %)

연도	총계 (비율)	시설급여기관수	노인요양시설	공동생활가정	재가급여기관수[1]	재가급여 서비스별 기관수[2]						
						소계	방문요양	방문목욕	주야간보호	단기보호	방문간호	복지용구
2015	**17,985 (100)**	**5,083 (28.3)**	2,935 (57.7)	2,148 (42.3)	**12,902 (71.7)**	22,898 (100)	10,068 (44.0)	8,244 (36.0)	2,015 (8.8)	299 (1.3)	573 (2.5)	1,699 (7.4)
2016	**19,398 (100)**	**5,187 (26.7)**	3,137 (60.5)	2,050 (39.5)	**14,211 (73.3)**	25,127 (100)	11,072 (44.1)	8,957 (35.6)	2,410 (9.6)	267 (1.1)	598 (2.4)	1,823 (7.3)
증가율	**7.9**	**2.0**	6.9	-4.6	**10.1**	9.7	10.0	8.6	19.6	-10.7	4.4	7.3

주[1] 재가급여 기관수 : 장기요양기관 기관기호 수

주[2] 재가급여 서비스별 기관수 : 재가급여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 (중복 有)

2 연도별 신설과 폐업 현황

(단위 : 개소, 급여종류별, 복지용구 제외)

구분 \ 연도		2008	2009	2010	2011	2012	2013	2014	2015	계
노인요양시설	개설	1,237	587	1,617	892	778	1,048	867	**729**	**7,755**
	폐업	29	102	515	572	522	711	624	**516**	**3,591**
재가기관	개설	10,391	10,929	4,597	2,817	2,525	2,571	3,265	**3,914**	**41,009**
	폐업	669	2,420	4,664	3,268	2,598	1,966	2,046	**1,803**	**19,434**

- 현재 운영 중인 재가기관 13,195개소 중 폐업이력이 있는 기관수 : 2,739개소(20.7%)
- 재가 폐업기관 19,434개소 중 동일한 대표자로 재개설한 기관수 : 3,841개소(19.8%)
- 재가 재개설기관 3,841개소 중 재개설 일자가 3년 이내인 기관 수 : 2,561개소(66.7%)